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 올해부터는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국세청에 신고해야
-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 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있으므로 성실신고 필요

1 개요

- 작년에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신탁을 설정·유지한 우리나라 거주자·내국법인은 올해 6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 단,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함(예: 3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9월 30일까지 신고 필요)
- 특히 해외신탁은 올해 처음으로 신고의무가 발생하므로 해외에 신탁을 설정한 납세자는 해당 신탁정보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가 쉽고 편리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 내용과 신고안내 계획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한다.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으로서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그 계좌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가 해당 계좌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 **(신고대상)** 신고의무자는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신고해야 하며,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해야 한다.
 -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 **(신고내용)** 해외금융계좌 보유자의 성명·주소 등 신원에 관한 정보, 계좌 번호·금융회사명 등 보유한 계좌의 정보, 명의자·실질적 소유자 등 해외 금융계좌 관련자에 관한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1).

3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내용

-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 법인은 해외신탁명세를 신고해야 한다.
 -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다르게 해외신탁의 경우 최저 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됨
- **(신고대상)** 거주자는 작년 연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에 신고 의무가 있고, 내국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중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다.
- **(신고내용)** 위 신고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①위탁자의 인적사항, ②해외 신탁 보유현황, ③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 신탁별 명세를 신고해야 한다(참고 6).

|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제도 비교 |

구 분	해외금융계좌 신고	해외신탁 신고
 신고 의무자	계좌 명의자 및 실질적 소유자	해외신탁의 위탁자
 신고기준 금액	해외금융계좌 보유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 초과	최저 신고금액 없음
 자산평가 기준일	매월 말일 중 해외금융계좌 보유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신탁재산 실질 지배·통제: 과세기간·사업연도 종료일 또는 해외신탁 종료일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
 신고내용	계좌번호, 잔액, 금융기관명	신탁계약 내용 및 재산가액 등
 신고기한	6월 30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법안: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 • 거주자: 6월 30일까지

4] 신고도움 서비스 제공

- **(안내책자 발간)** 국세청은 납세자가 쉽고 정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책자와 「알기 쉬운 해외신탁 신고제도」 책자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재할 예정이다(6.5).
 -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국세정책/제도⇒국제조세정보⇒발간책자
- **(개별 신고안내)** 6월 1일부터는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납세자 2만 7천 명을 선별하여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신고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다.
 -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으며,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또는 해외신탁 신고대상자인지 스스로 확인하여 기한 내 신고하여야 한다(참고 2, 7).
- **(개별상담)**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국세상담센터(☎126→2→6→2) 또는 신고안내문에 기재된 세무서 전담직원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5] 당부말씀

- 국세청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및 타 기관 수집자료, 현장 정보자료 등을 바탕으로 정밀분석하여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미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엄정하게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이 적발되는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되며, 특히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의 중요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고, 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등 구체적 탈세 정보 제공 시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참고 5).
-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자진신고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

담당 부서	국제 조세 관리관실 국제세원담당관실	책임자	과 장 이임동 (044-204-2801)
		담당자	사무관 박진우 (044-204-2817)



참고자료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6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7
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9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1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제도 13

해외신탁 신고제도

6. 2026년 해외신탁 신고제도 개요 14
7. 해외신탁 신고 방법 15
8. 해외신탁 신고시 유의사항 16
9.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8

참고 1

2026년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요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12.31.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신고면제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외국민)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2일 이하인 자 • (외국인 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자 • (국제기관 근무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며 급여에 대해 소득세법 또는 조약·협정 등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자 • (국가 등)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 • (기타 면제기관) 금융회사 및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하여 본인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 • (해외신탁 제출자)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 (상대국 거주자)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전체 잔액의 합계액이 5억원 초과
신고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의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가장 큰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 및 그 잔액 *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신고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년 6월(6.1. ~ 6.30.)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 보유한 해외계좌정보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에 기재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미·과소신고금액의 10%(10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소명의무) 미·과소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10% 과태료 추가 부과 • (명단공개)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공개 • (형사처벌) 미·과소신고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통고처분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미·과소금액의 13% 이상 20% 이하의 벌금 부과(병과 가능)

참고 2

해외금융계좌 신고 방법

- **(전자신고)**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이용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수 있음

* (경로) 홈택스·손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 해외금융계좌 신고

- **(수동신고)**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 해외금융계좌 홈택스·손택스 신고화면 |

홈택스	손택스
 <p>국세청 홈택스 (HomeTax) 메인 화면. 검색창과 메뉴가 표시되어 있음. '소득·법인세 관련 신청·신고' 메뉴가 강조되어 있음.</p>	 <p>손택스 (SonTaks) 메인 화면.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가 강조되어 있음. 하단 메뉴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강조되어 있음.</p>

- **(신고도움)**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할 수 있도록 기존 신고내역을 활용해 신고를 돕는 미리채움 서비스* 제공

* 신고의무자가 전년도 홈택스 신고내용을 활용하여 기준일 잔액을 제외한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등을 금년도 전자신고서에 바로 채워 넣을 수 있는 서비스

| 해외금융계좌 신고 미리채움 서비스 |

해외금융계좌 신고

Step1. 일반신고

Step2. 제출내역

메뉴펼침

메뉴접기

제출여부 >>> 작성중 입니다.

미리보기

01. 해외금융계좌 신고서

02.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03.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명세서

04. 신고자료 제출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 해외금융계좌별 명세 입력 화면입니다.
* <현지기업 고유번호>는 세무서장이 해외현지기업(해외지점, 연락사무소 등)에 부여한 고유번호를 입력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명세서

(단위: 현지통화, 원) **미리채움서비스** 초기화

* 계좌 관련자 정보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공동명의계좌 <input type="checkbox"/> 외국법인(100% 소유) <input type="checkbox"/>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계좌			
* 금융회사명	USBOFAS3N BANK OF AME1 코드검색	* 계좌종류	예금	
* 계좌번호 (가상자산계정명)	12345 <small>① 계좌번호는 하이픈(-) 표시없이 입력하고, 가상자산인 경우 계정명을 입력하세요</small>	* 표시통화	USD 코드검색 미국 달러	
계좌명의자	Hong gildong1	현지기업 고유번호		
기준일 잔액	* (외화)	0.00	* 개설일	2021-12-08
	* (원화)	0	해지일	yyyy-mm-dd
금융회사 소재지	* 국가	지역(주, 성 등)	도시	기타 상세주소
	US 코드검색 미국			

※ * <계좌종류>가 가상자산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① <금융회사명>은 가상자산사업자명 ② <계좌번호>는 계정명 ③ <국가>는 ZZ ④ <기타 상세주소>에 웹사이트 주소 입력

(서울외국환증개) www.smbs.biz

등록하기

○ 해외금융계좌 명세 목록

선택내용 삭제

선택	번호	보유계좌 일련번호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통화	계좌명의자	기준일잔액		금융회사 소 국가명
							(외화)	(원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1	1	BANK OF ...	12345	미국 달러	Hong gildong1	0.00	0	미국
<input type="checkbox"/>	2	2	AGRICUL...	67890	중국 위안 인민폐	Hong gildong2	0.00	0	중국

1 총2건(1/1)

해외금융계좌 집계현황 및 잔액 합계 표	해외금융계좌 총 건수	2	해외금융계좌 기준일 잔액 합계(원화)	0
-----------------------	-------------	---	----------------------	---

참고 3

해외금융계좌 신고시 유의사항

1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산출방법

- 매월 말일 보유계좌 잔액은 계좌에 보유한 자산별로 금액을 산정하고 그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 환율*을 적용하여 각각 원화로 환산한 후 합산하여 산출
 - *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피상속인 명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았다면 해당 계좌 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합산대상
- 가상자산의 경우 신고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 계좌(계정)가 개설된 해당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의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을 확인하여 잔액 산출
 -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운영되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국내·외 거래소들의 매월 말일 최종가격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여 가상자산 잔액 산출

| 해외금융계좌 자산 유형별 월말 잔액 산출 방법 |

자산 유형	산출 방법
현금	해당하는 매월 말일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상장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권 상장채권 가상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가격)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 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위 이외의 자산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② 매월 말일의 보유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방법

- 매월 말일의 보유 해외금융계좌 잔액을 원화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가장 큰 날이 신고기준일이며, 그 기준일 현재 보유 중인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날의 계좌별 잔액을 신고

* 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 고시된 환율을 적용

- 아래 사례에서 신고의무자가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의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한 달은 3월(9억 원), 5월(6억 원), 8월(6억 원)임

- 이 중 매월 말일 잔액 합계액이 가장 큰 3월 말일이 신고기준일이 됨
- 신고의무자는 3월 말 현재 보유 중인 A계좌 잔액(예금 1억 원)·B계좌 잔액(가상자산 4억 원)·D계좌 잔액(채권 4억 원)과 그 합계액(9억 원)을 신고하여야 함
- 신고기준일(3월 말일) 이후 5월에 개설된 C계좌(보험)는 2025년 중에 보유하고 있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신고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D계좌(채권)는 연도 중 해지하였더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됨을 유의

| 해외금융계좌 잔액 중 최고금액 계산 사례 |

(단위 : 억 원)

기준일 계좌	1/31	2/28	3/31	4/30	5/31	6/30	7/31	8/31	9/30	10/31	11/30	12/31
A계좌 잔액 (예금)	1	1	1	1	2	-	-	2	4	2	1	1
B계좌 잔액 (가상자산)	2	2	4	1	2	-	-	-	-	1	2	1
C계좌 잔액 (보험)	계좌 미개설				1	2	2	4	-	1	-	1
D계좌 잔액 (채권)	1	1	4	1	1	1	계좌 해지					
합계	4	4	9	3	6	3	2	6	4	4	3	3

참고 4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

2025년 6월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가 2025년 동안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2026년 6월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5년에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변동이 없더라도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26년에 다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연도 중 개설 또는 해지된 해외금융계좌도 신고대상인가요?

- 지난해 개설되거나 해지된 금융계좌라 하더라도 지난해 매월 말일 중 보유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날이 있고 그 합계액이 가장 큰 날에 해당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입니다.

3

잔액이 6억 원인 해외금융계좌를 부부 2명이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으며 지분율은 각각 50%씩입니다. 각자의 지분율대로 나누면 1인당 보유 계좌잔액(3억원)이 5억원 이하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공동명 의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에 상관없이 공동명 의자 모두가 잔액을 6억 원으로 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명 의자 중 한 명이 다른 공동명 의자의 계좌정보를 함께 신고하여 다른 공동명 의자가 보유한 모든 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그 다른 공동명 의자는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4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주식을 5억 원 넘게 보유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내 증권사를 통해 5억 원 초과 해외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5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해외주식시장에 상장된 국내법인의 주식이나 주식예탁증서에 투자한 경우 신고의무가 있나요?

-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상장주식(예탁증서 포함)은 국내주식이든 해외주식이든 모두 평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국내법인의 주식예탁증서도 신고대상입니다.

6

거주자가 비수탁형·탈중앙화 방식의 가상자산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있나요?

- 국외 사업자가 개인 암호키 등을 보관·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통제권을 가지지 않아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등에 관여하지 않거나, 콜드월렛 등 하드웨어 지갑서비스 국외 제조자 등이 판매하는 비수탁형·탈중앙화 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7

2025년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한국과 미국 양국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여 한-미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 기준에 따라 최종적으로 미국 거주자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하나요?

- 2025년 보유분부터는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 5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 제도

□ **(제보 포상금)**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를 적발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2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

○ 해외금융계좌 관련 제보는 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국세청 홈택스 탈세제보 메뉴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등을 방문하여 직접 제보 가능하며 제보자의 신원과 제보 내용은 법령*에 따라 철저히 보호됨

*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제5항 및 동법 제81조의13(비밀유지)

구분	제보방법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경로 : 상담·불복·제보 → 탈세제보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행위 제보)
우편제출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실(우.30128) 8-14, Guksecheong-ro, Sejong Special Self-Governing City, Korea 30128 National Tax Service, International Taxation Bureau
팩 스	0503-110-9069(해외 : +82-503-110-9069)
자동응답시스템	126(해외 : +82-126 또는 +82-63-126)
직접방문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
신고상담전화	044-204-2914(해외 : +82-44-204-2914)

○ **(포상금 지급액)** 과태료 또는 벌금액의 납부금액에 따라 5~15% 지급(20억원 한도)

과태료금액 또는 벌금액	지급액
2천만 원 이상 2억 원 이하	100분의 1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천만 원 + 2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5억 원 초과	6천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지급제외)** ①가명이나 제3자 명의로 제보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②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경우, ③과태료 금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 ④과태료(벌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을 통한 조세탈루 적발에 중요한 자료를 제보하는 경우 최대 40억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및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포상금을 포함하여 최대 90억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음(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분	내 용
신고의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의 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재산 이전 포함)하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위탁자”)
신고대상 신탁 (신고의무 유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매년 신고의무 발생 • 그 외의 경우 해외신탁 설정일이 속하는 연도에 신고의무 발생
신고기준금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저 신고금액 없음
신고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자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해외신탁별 명세(신탁명, 신탁 유형, 소재지, 신탁재산의 종류, 관련자 정보 등) 기재 * 해외신탁명세를 제출할 때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한 경우 해외금융 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됨(2025년 이후 보유분부터)
신고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6.6.30.까지* *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12월 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은 6월 30일까지) 신고
신고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년에 설정·유지하고 있는 해외신탁 관련 정보를 홈택스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
신고의무 위반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미·거짓신고금액의 10%(1억원 한도) 과태료 부과 • (제출·보완요구) 미·거짓신고한 자료에 대해 자료 제출 또는 보완요구를 받고도 그 요구에 불응한 경우 해외신탁 재산가액의 10%(1억원 한도) 추가 부과 • (소명의무) 미·거짓신고금액에 대한 출처 미소명 또는 거짓 소명시 미·거짓 소명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참고 7 해외신탁 신고 방법

- **(전자제출)** 6.30.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 (경로) 홈택스 >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 세금관련 신청·신청 공통분야 > 일반신청/결과조회 > 국세민원 서류 찾기 > 해외신탁명세서 > 신청하기
- **(수동제출)** 전자제출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제출 가능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 서식 「해외신탁명세서」

| 해외신탁명세서 홈택스 제출 화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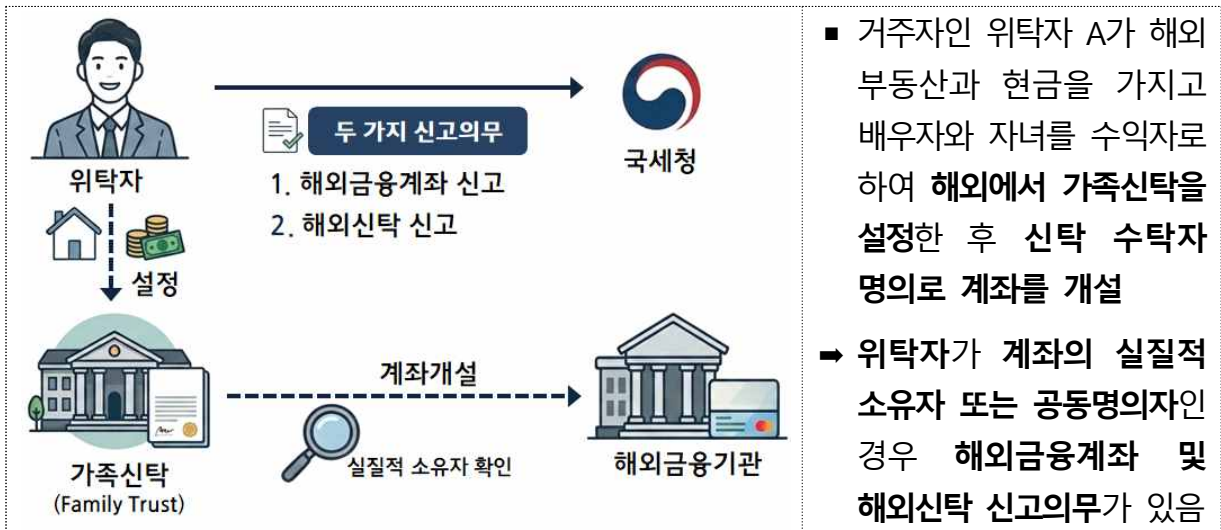
The screenshot displays the HomeTax portal interface. At the top, there is a search bar and navigation icons. The main menu includes categories like '계산서·영수증·카드',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세금신고', '납부·고지·환급', '지급명세·자료·공익법인',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상당·불복·제보', and '세무대리·납세관리'. The '증명·등록·신청·사업장현황' menu is expanded, showing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as a sub-menu. Under this, '일반신청/결과조회' is selected, leading to '국세 민원 서류 찾기'. The search results show '해외신탁명세서' (Overseas Trust Statement) as the only result, with options to '상세보기' (View Details) and '신청하기' (Apply).

참고 8 해외신탁 신고시 유의사항

1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했더라도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 해외금융계좌에 해외신탁을 포함하여 신고하고 있는 경우라도 해외금융계좌 신고와 별도로 해외신탁 신고를 해야 함
 - 예를 들어, 해외신탁을 통해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위탁자가 그 계좌의 실소유자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모두 신고의무 발생
 - * 해외금융계좌는 계좌 명의자와 실소유자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며, 공동명의 계좌 또한 각 공동명의자가 모두 신고하여야 함
 - 다만, 해외신탁 신고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모두 기재한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는 면제됨

|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을 모두 신고해야 하는 경우(예시) |





2 가상자산도 신탁으로 이전한 경우 신고대상

- 해외신탁의 경우 현금,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그 재산의 종류와 상관없이 외국법령에 따라 해외신탁을 설정하였거나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해외신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 가상자산을 재원으로 해외신탁을 설정하였거나 해외신탁에 가상자산을 이전한 경우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③ 국내 세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하면 신고의무 발생

- 지난 10년 중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를 제외한 모든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내국법인이 100% 직·간접 출자한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직원 역시 해외 체류 중이라도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신고의무 면제자 |

구 분	해외금융계좌	해외신탁
외국인 거주자	 <p>10년 전('16.1.1.~'25.12.31.)부터 국내 주소/거소 기간 합계 5년 이하</p>	
재외국민	 <p>1년 전('25.1.1.~'25.12.31.)부터 365일 국내 거소 기간 합계 182일 이하</p>	면제규정 없음
기타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금융회사, 국가공공기관 등	면제규정 없음

* '25.1.1.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보유하는 해외금융계좌부터 적용

참고 9 해외신탁 신고제도 주요 질의응답

1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 위탁자가 해외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에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했다라도 해당 해외신탁이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그 외의 경우에는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설정하는 해외신탁부터 신고의무가 발생하며, 따라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정한 해외신탁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2

하나의 해외신탁에 위탁자가 여럿인 경우 한 사람만 신고하면 되나요?

-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에게 해외신탁명세 제출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 중 일부가 명세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면 다른 위탁자의 제출의무는 면제됩니다.

3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나요?

- 해외신탁 신고의무자는 외국법령에 따른 신탁 중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해외신탁)을 설정(재산을 해외신탁에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이므로 해외신탁 수익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 다만, 신고의무자인 위탁자가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할 때 수익자인 정보, 지분비율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4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한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하였다라도 해외신탁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신탁명세서 제출시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5

연도 중 거주자였다가 국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도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 소득세법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를 국외로 이전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해당인이 거주자일 때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이므로 출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해외신탁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 외국인도 국내 거주자라면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신고대상연도 말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며,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를 말합니다.

7

위탁자가 여러 명인 해외신탁에 대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누가 부과받게 되나요?

- 해외신탁의 위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의 위탁자가 해외신탁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태료도 각각의 위탁자 모두가 부과받게 됩니다.

8

미신고 금액에 대한 출처를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소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소명한 금액의 20%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에 따라 재산 취득자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위탁자가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